

대학원 회화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회화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회화학과 석·박사 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회화학과 소속 교수들은 회화학과 석·박사 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회화학과 교육과정의 운영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제도에 따르며, 과목개설 및 교·강사 배정에 대해서는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5조 (과목개설) 전임교수 2인 이상 또는 과반수의 대학원생들의 의견이 있는 경우 새로운 과목 개설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전임교수 회의에서 학과 특성 및 시대 변화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학과를 통해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교·강사 배정) 교강사의 자격은 전임교수 및 국내외 저명한 연구자를 교·강사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회화학과의 지도교수 선정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제도에 따른다.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회화학과 종합학력시험의 면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해당하는 실적은 종합학력시험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한정한다.

- 1) 학술 등재지 1편 게재(제1저자, 교신저자 포함)
- 2) 학술 등재후보지 2편 게재(제1저자, 교신저자 포함)
- 3) 입학 이후 공인된 전시장(미술관, 대안공간, 교내전시관 등)에서 개인전 1회 또는 단체전 3회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회화학과 종합학력시험의 대상은 학과 전임교원이 담당한 교과목으로 한정하고, 2개 과목을 선택해야 하되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 중 선택 가능하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공동 출제 및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합학력시험의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정한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 학생은 공인어학시험 영어 성적 또는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가 가능하다.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성적 또는 영어 성적(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으로만 면제가 된다. 세부 사항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제도에 따른다.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회화학과 재학생은 2학기 말에 학위작품과 학위논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위 과정을 정하며, 각 과정의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위작품을 선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취득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 33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전공 24학점, 작품지도 9학점)

나)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다) 학위작품(작품제작보고서 포함) 제작·발표 후 정해진 심사과정 통과

2) 학위논문을 선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취득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 33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전공 24학점, 연구지도 9학점)

나)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다) 학위논문 작성 후, 정해진 심사과정 통과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하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작품지도, 연구지도 세미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매 학기 지도교수에게 지도를 받아야 하고, 예비발표 전에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제14조 (예비발표) 학위작품 혹은 학위논문을 심사받기 위해서는 심사신청 전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논문심사위원) 회화학과는 논문심사위원 구성은 일반대학원 학사제도에 따른다.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학위작품을 선택한 경우 취득방법과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 차	학위작품	비고
자격기준	· 자격시험(종합학력, 외국어) 통과 · 연구윤리교육 이수	· 면제기준 공지사항 참조
연구계획서	· 과정이수 및 예비발표 전에 지도교수에게 제출	
작품제작보고서 작성	· 작품제작보고서 작성	· 12페이지 이상(이미지를 제외한 본문만) 단국대 논문작성 규정을 따름
심사위원 인원	· 3인 (지도교수 + 교내교수 2인)	
예비발표	· 전시작품·작품제작보고서 예비심사	· 위촉된 심사위원 3명과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반드시 시행
심사신청	· 웹정보에 심사신청 후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	
심사	· 심사용 작품제작보고서 3부를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제출, 학과 내규에 따라 작품발표(전시) 심사	· 공인된 전시장(화랑, 대안공간, 미술관, 교내전시관 등)에서 시행한 학위전시만 인정 · 학위과정 중 제작된 2,000호(평면 작업 기준) 중 1,000호 이상 발표
합격 여부 판정	·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	· 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를 확인·서명 후 결과 보고서를 학과로 제출
제출자료	· 완성된 작품제작보고서, 작품 화보집, 작품사진집을 제출	

제17조 (논문대체 제출) 제출자료는 전공과 관련된 개인의 창작물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회화학과 학위작품 제작 보고서(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하지 않음)와 작품 화보집, 작품사진집으로 정한다. 학위논문 대체를 위한 해당 관련 자료는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한 뒤 폐기한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전임교수 과반수가 참석 (위임 포함)한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 교수의 2/3 찬성 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